



소방계획 수립 및 화재시 초기소화

제1장 소방계획 수립

1 소방계획의 의의

소방계획이라 함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 자체에서 만일에 있을 불의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사고시 인적 또는 물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준비 과정을 말한다.

2 소방계획의 중점사항

소방계획은 소방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방화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계획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계획은 일반건축물, 시장, 호텔, 공장, 위험물 관련 시설 등 자체 특수장소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여야 한다.

- (1)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2)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 (3)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안전구획의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
- (4)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실내마감재료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된 것) 및 방염 그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

- (6) 인원의 수용계획
- (7) 소방훈련 계획
- (8)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9)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10) 공동 및 분임방화관리에 관한 사항(동일구내에 특수장소가 2곳 이상 있는 경우)
- (11) 그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3 소방계획의 내용

소방계획은 작성하기에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소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위소방태세를 확립하고 방화관리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규 또는 사칙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자위소방대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문식으로 작성하여 당해 관계인 중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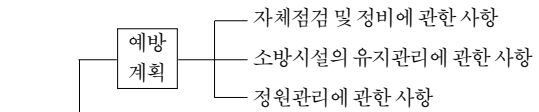
가. 총칙에 관한 사항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를 책임지고 추진할 방화관리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소방계획의 운용과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규모가 큰 대상처에는 방

화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심의사항도 포함한다.

나. 방화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방화담당책임자와 시설 또는 각종 설비의 검사 담당자의 조직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의 방법과 시기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재해에 방을 위한 소방계획과 방어대책에 관한 사항



다.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 ① 자위소방대의 조직편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 ② 통보연락 및 응급구호에 관한 사항
- ③ 방화활동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④ 훈련과 자위소방대의 장비에 관한 사항

소(1) 자체점검 및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방검사대상아파트 화재가후에관한사항, 가연물, 훈련, 전기설비, 위험물 관제, 위험물 관리, 화재, 점검자를 정하고 연간계획, 일중계획 방출 수합하여 효과적인 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타사항

- ① 소방안전점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 긴급사항은 사전 보수 후 사후 결재 또는 권한의 위임(점검결과조치 항목에 삽입 또는 별도로 사전에 내부결재 필요)
- ② 소방훈련 불참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자체 방화환경 조성을 위해 외래 강사를 초빙한 소방교육계획 또는 소속직원 자녀들의 불조심 사생대회나 글짓기 대회 등의 내용 포함의 여부 등

- ① 건축물, 화재, 위험물, 소방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피난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처리 대상물
- ②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
- ③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에 관한 사항
- ④ 그밖의 화재예방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4 소방계획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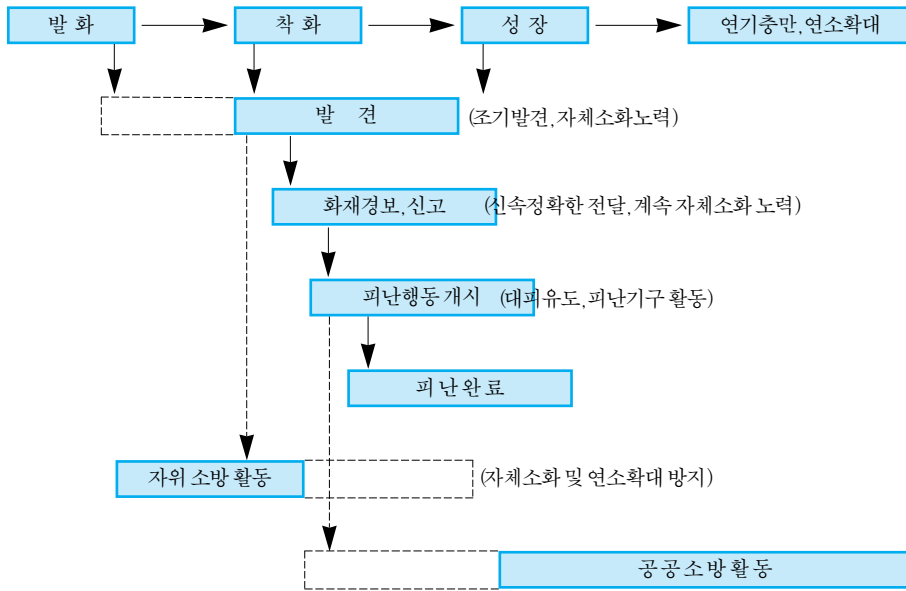
소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당해 건물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작성·운영한다.

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소방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하며, 수리는 어떤 경로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시설의 보수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한계를 명확히 정해두도록 한다.

가. 예방계획

③ 인명안전에 관한 사항
 화재사고는 대부분이 불시에 발생되므로 대중이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소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피난시설의 확보 및 기능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림 1] 화재진압에 관한 단계적 조치사항

제한된 시설이나 피난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피난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느 문을 열고 어느 쪽에 설치된 출구로 유도할 것인가, 또 피난시의 경로와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통로나 비상구, 출입구 등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능보존 등 전반에 걸쳐 인명구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방어계획

(1) 통보연락에 관한 사항

소방기관에 화재발생을 통보하고 소방대가 도착할 때, 즉각 유도하는 일과 건물내부에 옥내 방송망 등을 통하여 화재 사실을 통보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그림 1 참조]

(2)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화재시에 있어서 피난자의 유도와 건물내부의 인명

구출 및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가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소화에 관한 사항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등 기존 소화설비에 의한 소화의 계획, 즉 화재발생시 자체 소화설비를 이용해서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설비의 모터전원 메인스위치를 차단시켜 놓은 경우 또는 비상수원이 상시 저장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4) 경제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시 연소우려가 있는 옥내·옥외의 중요물품 등을 비상반출하거나, 비화경계, 기타 도난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교육훈련계획

(1)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은 사내 종업원에 대한 중점적인 교양과 건축물내의 전체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다. 이는 자체에서 행하는 교육과 소방관서 및 협회에서 화재예방상 교육이 필요하면 행하는 것으로, 월중계획과 연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은 형식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짜임새 있도록 하되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시 출장이나 직위가 상급자라고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불참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분 등이 있음을 사내공고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도록 한다.

(2)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은 크게 부분훈련과 종합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에서 행하는 부분훈련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의 사용방법과 통보연락이나 대피유도 등의 부분적인 훈련을 말하며, 종합훈련은 화재신고에서부터 소화, 대피유도, 응급처치, 복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개인별 임무를 지정, 실제상황을 부여하여 모의훈련을 하는 것이다. 특히 종합훈련은 매 훈련마다 화재발생장소나 피난통로 등을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을 실시한 다음에는 사후 평가를 통하여 개선점을 밝혀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5 소방계획 작성예

가. 총칙

(1) 목적

방화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이를 실천하여 예방·경계 또는 초기에 진압하여 인명과 재해등을 보호하는데 있다.

◀ 작성예 ▶

(2) 적용범위

모든 소방대상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

◀ 작성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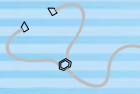
제1조 【목적】 소방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작성예 ▶

제2조 【적용범위】 본 대상처의 모든 건축물과 관리자, 종업원들 그리고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조직 및 임무

예비군·민방위대 등 제방위요소의 통합대상과 일



반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직하고, 야간 또는 공휴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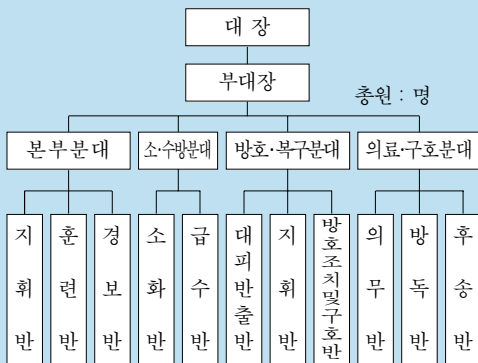
수업무시간에 근무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업무를

제3조【지휘감독】 1 본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대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방화관리자의 의견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2 방화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들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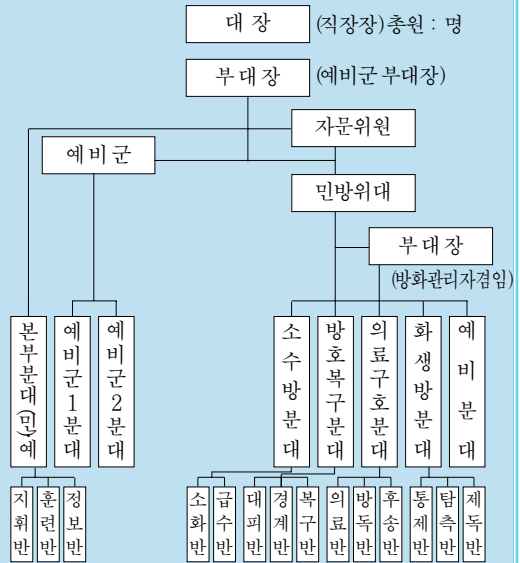
제4조【조직 및 임무】 1 당 직장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제 방위요소의 통합대상이 아닌 일반대상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에 의한다.



※각조직의 하단부에 편성된 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제 방위요소의 통합대상인 경우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에 의한다.



(주)본 조직표를 각 실과 사무실 및 작업장 등에 부착하여 각자 임무를 숙지하게 한다.

※각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 인원 변동시 수시로 교체 작성한다.

• 복합 건물 등 상시인원이 최소인 업소는 건물에 적용하여 편성을 할 것

※예비군 중대에도 자위소방대(민방위대)임무 부여

야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편성 운영한다.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대상의 자위소방대 조직도 이에 따른다.



※ 1 각조직의 하단부에 편성인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인 경우와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대상은 위 표에 의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이나 화재 발생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분대별	반별	임 무
본부 분대	지휘반	직장장, 차석순으로 대장, 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훈련반	연간 및 월간 소방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소수방 분대	경보반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소화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방호 복구 분대	급수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대피 및 반출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계반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의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방호조치 및 복구반	방화문폐쇄, 기타문의 개방,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의료 구호 분대	의료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방독반	민방위업무수행
	후송반	사망자안치 및 질식 등, 경상자지정 병원으로 긴급후송 · 치료조치

⑤ 방화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관련법규 : 소방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

◀ 작성예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제9조 제2항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 운영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1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연2회, 2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연 1회 실시한다.
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유지관리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
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⑥ 소방대책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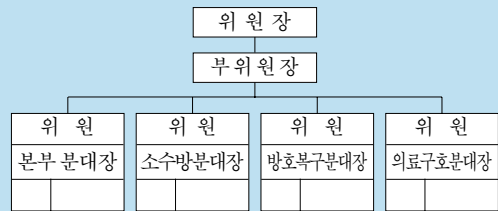
- ① 위원장 : 직장장
- ② 회의방법 : 정례회, 임시회

③ 목적 : 방화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 · 결정

◀ 작성예 ▶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등】 당직장의 소방대책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반드시 직장대표로 한다.
2.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3. 위원회는 방화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결정된 사항은 기록유지 및 지체없이 실천한다.



나. 화재의 예방

(1) 소방검사(자체검사)

소방검사는 소방법 제32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관할 소방소장에게 보고 및 보관한다.

◀ 작성예 ▶

제7조 【소방검사】 1. 소방검사(자체점검)는 소방법 제32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1항의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이를 기록 · 유지한다. 또한 점검사항을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소방검사에 소방시설 외관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기록 유지한다.

4 점검결과는 시행규칙 제30조(점검결과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점검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5 상·하반기 자체 점검은 자체적 점검기구로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자체 보관한다.

② 소방시설의 정비보완

◀ 작성예 ▶

제8조【소방시설의 정비보완】 1 관할 소방서 및 점검 대행자의 점검 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2 자체 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직장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한다.

3 소방시설 점검 업체에 위탁하여 점검하려 할 때는 소방설비 공사업의 면허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4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 할 때는 소방설비 공사업 등의 면허증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③ 방화순찰

순찰지구, 노선을 정하여 순찰하고, 순찰일지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 작성예 ▶

제9조【방화순찰】 1. 당 직장의 방화순찰지구는 ()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개소를 설치·운영한다.

㉗ 순찰지구명 :

㉘ 순찰노선 :

㉙ 순찰함 설치장소 :

※ 필요시에 도면작성 첨부

2 방화순찰 요령은 1일 ()명이 2시간마다 1회씩 순찰하고 특히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순찰지를 보강 운영한다.

3 방화순찰자는 순찰중 특이사항을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토록 하며, 순찰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교육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교육으로 년1회 이상 화재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의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 작성예 ▶

제10조【소방교육】 1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1급 대상물은 연2회 이상) 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관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방교육의 강사는 방화관리자 및 관계전문가를 초빙하고 실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소방교육의 시기와 강사는 상반기 중에(1급 대상물은 상·하반기 초에) 결정 실시하며, 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 실시한다)

4 소방교육은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사항을 교육 일지에 기록·유지한다.

⑤ 방화환경 조성
선전유입물을 부착하고, 홍보하여 직장내에 방화 환경을 조성한다.

◀ 작성예 ▶

제11조【방화환경 조성】당 직장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부착 또는 설치물설치장소	부착 또는	내 용
선 전 물	현수막	
	플랜카드	
	입간판	
유 인 물	표어	
	포스터	
	경고문	
주위표시		
기타 홍보물		
불조심 월 회 홍보방송		

⑥ 화기사용제한
화기 취급자는 방화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취급한다.

◀ 작성예 ▶

제12조【화기사용제한】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 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 현장에의 감독자 지정운영 및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직장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통제, 제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경고문을 부착한다.

◀ 작성예 ▶

제13조【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당 직장의 화재예방상 인원의 출입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지정 구분	구역 명칭	통제 및 제한 경고내용
통제 구역		
제한 구역		

다. 화재의 진압
① 소방훈련
① 소방훈련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실시
② 연간 소방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후 결과는 일지에 기록·유지

◀ 작성예 ▶



제14조【소방훈련】1 당 직장에서 실시할 소방훈련의 종류는아래와 같다.

훈련명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설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2 소방훈련은아래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 ㉠ 가능한한 자체 연간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소방능력 재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기초,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 훈련 실시시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종사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 ㉣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한다.
- ㉤ 특히 종합훈련 실시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훈련상황 부여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혼돈을 방지한다.
 - 가상 발화점은 발화위험,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 가상화점의 표시는 연막탄이나 기를 사용한다. 기를 사용하여 화점을 표시할 경우는
 - 연소범위 : 붉은색기
 - 소화범위 : 노란색기
 - 연소확대범위 : 붉은색 기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작전이 되도록 한다.

3 연간소방훈련계획

(단위 : 회)

월별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훈련													
부분훈련													
기초훈련													
도상훈련													

4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 후 반드시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발생시의 행동요령

직장 실정에 적합한 세부 행동요령을 정하여 실시한다.

◀ 작성예 ▶

제15조【화재발생시의 행동요령】1 전 입주자 및 종사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3 자위소방대의 기본 행동요령

가. 소방훈련의 5단계

- ①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전 종사원 및 이용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화요청을 청한다(통보훈련)
- ② 화재의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인원의 대피를 유도 실시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대피 및 구조훈련)
- ④ 화재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있는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시설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소화훈련)
- ⑤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곳에 중요 재산 등 반출이 가능한 물건을 질서 있게 밖으로 운반한다. 또한 화재 중이나 대피 중에 발생한 부상자는 구조 활동으로 즉시 병원 등으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의료구조 훈련)

나. 행동요령

- ①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경보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이용하여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소방서에 신고한다.
- ②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한다. 유류에 의한 화재라면 분말소화기, 모래가마니, 이불 등으로 최단 시간에 소화하여야 한다. 초기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없이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다. 침착한 소화활동

- ① 소화요원은 화재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후 침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②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해 내야 한다.
- ③ 화점으로 접근 할 때에는 낮은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 부분을 꺼야 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위하여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라. 인명구조요령

인명탐색 중 인명을 발견했을 때에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부상자발견시 상처를 확인·보호하여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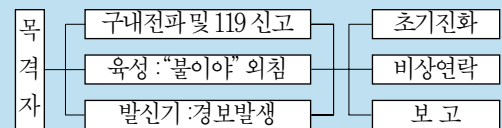
마. 교통통제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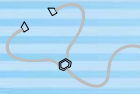
- ①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의 통로를 원활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 ② 소화작업 요원과 관계자 이외에는 현장 출입을 금지시킨다.
- ③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의 도난 방지를 철저히 한다.

바. 응급복구요령

- ①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 정돈하여 주의 정비를 신속히 한다
- ②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 업무에 지장 없게 한다.
- ④ 즉시 복구 가능한 곳은 계획을 수립하여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구한다.

4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5 대피요령

- ①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② 통로의 유도 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 ③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한다.
- ④ 승강기는 화재 발생층에서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우려가 있고 엘리베이터(승강기)통로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함으로써 질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⑤ 문 손잡이가 뜨겁거나 문 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 ⑥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건물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을 물에 적서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6 소화기 사용방법

- 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다.
- ② 안전핀 링을 잡아챈다.
- ③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한다.
- ④ 상하 레버를 강하게 친다.

7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 ① 2인 이상 1조로 한다.
- ② 소화전함을 열어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밖으로 끄집어 낸다.
- ③ 화재 발생 장소에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수가 자세를 낮추면 보조원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관창수를 도와 화재를 진압한다.
- ④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진화 후 조치를 취한다.

라. 방화관리 일반

- (1) 소방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 유지
 - ① 방화관리자는 직장내 소방관계 현황 작성 유지
 - ② 방화관리업무에 필요한 서식 비치 활용
 - ③ 방화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보존, 관리
- ◀ 작성예 ▶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서식의 작성 유지】 1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 비치하고 수검시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 기본 현황
- 건축물 배치도 및 소방시설 배치도
- 소방시설 현황
- 방화시설 현황
- 위험물 시설 현황

- 특수가연물 취급 현황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 점검 · 정비반 편성표
 - 소방대책 위원회 회의록
 - 소방시설 점검 결과 보고서
 -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표
 - 소방시설의 작동 기능 점검표
 -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 방화순찰일지
 -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기록부
 - 소방시설 정비 · 보완 기록부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 위험물제조소 등의 일반 점검표
 - 기타 방화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황 등
- 2 방화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방화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서
 - 공동 방화관리 규정 신고서
 - 소방설비공사 시공(변경)신고서
 -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신고서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 소방시설 공사 하자 여부 심의 신청서
 - 제조소 등 설치 허가 신청서
 - 제조소 등의(위치, 제정, 변경, 품명) 변경 허가 신청서
 - 위험물 탱크 안전 성능시험 신청서
 - 제조소 등의(완공,부분완공)검사 신청서
 -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완공 검사 신청서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서
 - 예방규정(제정,변경)인가 신청서

- 제조소 등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위험물 임시저장 · 취급승인 신청서
-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서
-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 기록표
- 제조소 등 정기 점검 결과 보고서
- 정기 점검 신청서
- 정기 점검 필증
-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표·점검업체용

※ 지면 관계로 관련 서식은 생략함

②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 작성예 ▶

제17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마. 벌칙

(1)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불이행자에 대하여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인사조치 규정 마련

◀ 작성예 ▶

제18조【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장 초기소화

1. 개요

화재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되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그 화재를 초기에 소화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된 인원과 특수 장비·기구 등을 보유한 소방대가 불철주야로 상시 대기상태에 있는가 하면 각 직장 내에서는 자위소방대가 조직·운영되고 있다.

또한, 소방과 관계되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법에서부터 119 신고요령, 대피유도 및 기타 소방시설 등의 사용법을 숙련시키고 있으나, 뜻하지 않은 화재를 접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당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불이 나면 대피와 동시에 “불이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겠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또박또박하게 119 신고를 하게 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응급상황에서 고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방화관리자나 화기 취급책임자는 물론 입주자 기타 우리 모두는 초기소화 활동 요령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일상생활 중에도 늘 염두에 두고 지내는 것이 유비무환의 자세일 것이다.

만일 어느날 갑자기 불이 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즉각 그 불을 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근래에는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날로 그 비치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소화차가 도착되기 이전에 자체 소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쉽게 말하면 1~2만원 정도의 값싼 소화기를 적시적소에 비치·사용하게 되어 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수천 수억원의 재산손실을 막아준 셈이다.

그러나 자칫 그릇된 생각으로 “우리집이나 우리 회사는 불이 나지 않겠지” 혹은 “불이나도 탈 물건이 없으니까” 라는 등의 생각이나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 달

려와 꺼 주겠지” 등의 기대 심리를 갖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불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많다.

요즘에는 그 넓은 대로변은 매일 같이 자동차의 홍수를 이루고 집앞 골목길까지도 뺨뺨하게 주차해 놓은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량이 기대 이상으로 신속히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은 자기 스스로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어느 긴급상황에서라도 재치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소화기 사용요령 등을 배워 익혀 두어야 할 것이다.

2 초기소화작업의 단계적 조치사항

가. 초기소화작업의 단계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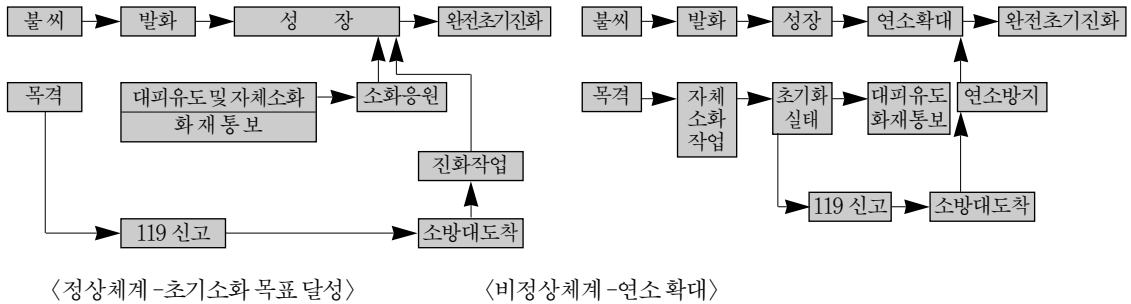
① 소화작업은 침착하게 진행한다. 소화작업에 임하는 대원은 무계획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우선 화재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후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② 소화작업은 가능한 한 화점 가깝게 접근하여 불꽃 중앙에 두고 포위하여 사방에서 동원가능한 소화기구 또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소화작업을 행해야 하며, 작업의 순서는 불이 타고 있는 아래 부분부터 끈 후 윗 부분을 끄도록 한다.

③ 불길을 잡을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장소로 한 걸음씩 후퇴하면서 화재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연소방지에 주력한다.

④ 화재 현장 주위의 불길이 옮겨 불을 우려가 있는 가연성 물질은 재빨리 제거한다.

⑤ 발화건물의 외벽 등에 물을 뿌리게 되면 건물 자체의 구조내력이 손상되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기왓장이나 벽돌 등에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림 2] 화재진화의 단계적인 조치 체계도(일반적인 화재)

나. 대피, 유도 단계적 조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피·유도의 단계적인 조치로서 다음과 같다.

① 평소 건물 내부에 익숙한 경우에는 대피상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누구든지 생소한 건물에 찾아가거나 호텔 등 숙박시설에 투숙할 때는 반드시 피난통로나 비상구·피난기구 등의 위치를 숙지하였다가 유사시에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피난방법을 결정하여 연기가 없고, 가급적 화점으로부터 반대쪽 방향으로 피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대가 도착되기 이전에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구출을 위하여 옥내에 진입할 때에는 손전등이나 로프 또는 갈퀴리 및 기타 물수건 등을 휴대하고 계단이나 난간 벽체 등을 따라 진입하되 반드시 탈출구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③ 높은 열이나 유독가스 등의 발생장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창문 등을 부수어 공기를 유통시킨 후에 진입해야 하며, 인명 검색시는 막다른 곳이나 창문 근처 또는 화장실이나 욕실입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④ 부상자 발생시는 상처를 확인하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구출한 환자는 사태에 따라

지혈을 시키거나 인공호흡 실시 등 응급조치를 한 후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긴급히 후송해야 한다.

⑤ 농연속에서 자체적으로 인명점검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가급적 냉정하게 판단하여 실시하고, 소방대가 도착하게 되면 건물내부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명 검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화재시 행동요령

화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화재경보나 대피 또는 119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평소 교육·훈련을 통하여 배워 익히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므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가. 화재경보

화재가 발생되면 “불이야” 하고 외치거나 비상경보벨을 울리는 행동이 가장 급선무이다. 불이 났다는 긴급소식을 접한 이웃주민들은 119 신고를 하게 되거나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 소화활동에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대피가 우선적일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화재 발생시에는 스스로 놀라 “불이

야”하고 외치게 될 것이며, 또한 옥내 자체방송을 할 수 있는 대형건물에서는 119 신고·접수시 건물내 자체 경보방송으로 화재발생 장소가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그지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경보는 화재 발견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대피·유도

화재시 대피·유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질서 있고, 냉정하며 신속한 행동이 최우선이다. 대피요령 으로서는 물수건 등으로 코를 가볍게 막아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를 한 다음 가장 빠르게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당황하게 되면 평소의 약 3배 이상의 호흡을 하게 되므로 빠른 호흡이나 심호흡은 연기를 보다 많이 들이 마시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되도록 짧게 호흡을 하면서 피난구나 통로유도 등의 화살표 방향을 따라 대피를 해야 하며, 부득이 1층으로 대피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무리한 행동은 절대 삼가하여야 한다.

다. 119 신고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초기에 즉시 자체 소화를 해 버렸다면 119 신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 촉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게 되어 초기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피나 119 신고 등 어느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지 판단이 흐려져 119 신고가 지연되고 결국 초기소화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됨에 따라 고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막강한 인적 자원과 특수한 장비·기구 등을 보유하여 상시 대기중인 소방력에의 지원요청을

잠시도 주저할 필요는 조금도 없으며, 소방력지원 요청시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119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 ① 화재발생 사실
- ② 발화건물 등의 소재지와 건물의 명칭
- ③ 연소상황과 연소물건
- ④ 부상자 또는 구조대상자 유무와 위험물 특히 고압가스의 유무
- ⑤ 기타 신고자 전화번호까지 알려준 후 반드시 소방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소화요령

가. 담요나 기타 덮개 등을 이용한 소화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소화하는 것은 화재 발견이 얼마나 빨리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의 119 신고 및 자체소화를 유효 적절하게 했는가 하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가스 화재 등 폭발적으로 연소성이 있는 화재시에는 소화할 여유도 없겠지만 가정에서 튀김요리 중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였거나 야채를 집어 넣게 되면 손쉽게 소화할 수 있으나 찬물을 끼얹게 되면 기름이 튀겨 연소확대 위험요인은 물론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비교적 연소 위험요인이 많은 석유난로가 넘어져 타고 있을 때에는 소화기가 없더라도 물에 적신 담요나 옷가지 등으로 덮어 끄거나 혹은 모래 등을 뿌려 완전 질식소화를 하였다면 다행이나, 한 두사람의 힘으로 불을 끄다 실패하여 결국 119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 불은 이미 자체소화할 정도 이상으로 다른 연소물질에 옮겨 붙은 후일 것이다.

화재가 발견되는 즉시 119 신고와 자체소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소방대가 연소 확대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작전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나.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화기는 여러종류가 있으나, 그 사용방법은 대부분 “안전핀을 뽑고 화점으로 향하게 한다 음 손잡이를 움켜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며, 소화기 사용에 있어서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화점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며, 소화작업에 임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것은 분말가루가 불씨에 닿아야 불연성 가스가 생성하게 되므로 가급적 가까이에서 발사해야 한다.

소화기의 보관은 습기가 없고, 특히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만 급한 상황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화기를 화기 취급소 등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만이 비상시에 그 효용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다. 옥내소화전에 의한 초기소화

(1) 개요

옥내소화전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화초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자치 고정설비로써 수원, 가압송수장치, 호스,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사용요령과 주의사항(수동기동방식)

- ① 화재 발생시 화재경보를 위해 화재경보 발신기(스위치)를 누른다.
- ② 가압펌프 작동 스위치를 누른다. 이 때 적색 표시등에 불이 켜지는지를 확인한다.
- ③ 소화전 함을 열고 소방호스를 화점방향으로 전

개한다.

- ④ 호스를 전개할 때 호스가 꺾이게 되면 물이 나오지 않게 되므로 주의해서 전개한다.
- ⑤ 밸브를 개방한다.
- ⑥ 방수시 수압이 높을 경우에는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자세를 낮추고 가급적 벽 등에 기대어서 방수한다.
- ⑦ 필요에 따라 호스를 연장할 경우에는 가압펌프 작동을 중지시킨 후 실시한다.
- ⑧ 호스 연장 후 방수 지시에 따라 가압 펌프를 재작동한다.
- ⑨ 방수 중 호스를 놓치거나, 호스 연결작업 중에 가압펌프를 작동시킬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⑩ 진화 후에는 가압펌프 작동을 중단시키고 밸브를 잠근다.
- ⑪ 호스를 잘 건조시킨 후 호스 걸이에 적재하여 만일에 있을 다음 화재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